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태 - 심리학 분야 중심으로 -

이 선 근[†]

경기대학교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축관계소송, 의료관계소송, 지적재산권관계소송 등 소위 전문소송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충분한 심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사건의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관련 사건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지원받게 되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 국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심리학 분야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적 설명이 실질적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과 그와 관련된 법규정을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의 유사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전문심리위원제도에 있어 전문심리위원들이 심리적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심리평가 도구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후 전문심리제도를 이용한 사건들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이 법관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서를 요청한 사례들은 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과 2009년에는 증가 추세였으나 2010년에는 급감하였으며, 본 제도를 이용한 사건들이더라도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관들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의견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법관의 양형판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 지식과 해석을 제공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마련된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가의 의견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법관들은 여전히 자유재량권을 사용하고 양형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전문심리위원제도, 심리적 설명, 양형판단

[†] 교신저자 : 이선근,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5층 변호사 이재진 법률사무소, 031-211-7676, lsk8470@naver.com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설명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법관들의 양형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법관들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이용한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설명서를 참고하여 양형판단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법관들이 전문심리위원들의 설명서를 판결 시 양형판단을 하는데 참고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양형판단에 대한 정당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앞으로 고무죄 형량, 전관예우 등 사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법관들의 양형차이에 신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법관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판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국내의 전문심리위원제도와 비슷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심리적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는 심리평가도구들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판결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 및 관련 법 규정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과 의의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충실하게 하려는 제도이다(함영주, 2008). 2007년 7월 민사 소송법 일부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해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입법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79의 2에서 8은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련된 법률이 추가되어 정의되어져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에 말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는 우선 후보자 명단에서 후보자¹⁾를 선정하고 해당 후

-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 이하 동(同) 규칙으로 명함). 그러나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

보자의 참여를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참여 결정을 하게 된다.

둘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방식은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검증기일 등)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 혹은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대하여 구술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셋째, 전문심리위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 넷째,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므로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사실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에 의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전문지식

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절차에서 법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충실한 심리를 하기위해 도입되었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전문심리위원은 특정 사건에 관한 해당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됨으로서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참여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매 2년마다 1회씩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가를 모색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단,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등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공평하고 중립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심리위원은 참여하는 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되며 소송절차의 참여는 설명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성격 및 필요성

함영주(2008)의 연구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의 성격을 첫째, 법관의 보조자, 둘째, 법관의 협

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동 규칙 제3조 제1항).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동 규칙 제3조 제3항).

력자, 셋째, 법관의 조언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법관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은 민사 소송법 제164조 2의 2항에 잘 나타난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설명서 또는 의견서를 보고서로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 소송법 제164조의 3을 보면, 법관처럼 전문심리위원이 기피신청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을 취소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어 법관과는 차별화된 지위에 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감정인의 의견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서를 시키지도 않으며 법관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인 사건의 쟁점 정리를 돕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서는 법관이 보다 쉽게 그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을 보조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법관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지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과학 분야 및 심리 분야에 관한 사안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이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하여 그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관에게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는 전문가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관은 그 설명서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과 함께 재판을 한 것으로 볼 정도로 법관의 재판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협력자의 역할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관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느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시작부터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인력에 속해 있는 중립적인 제 3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여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일정한 여비, 숙박료 및 수당을 국고에서 지급(민사 소송법 제164조의4, 이하 동법)하고 있다.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164조의7), 형법상의 뇌물죄 등에 적용함으로써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164조의8)을 두고 있다. 전문지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사건에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당 법관은 실질적으로 전문심리위원에 의해 제시된 의견서를 판단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서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분야에 있어 전문심리위원은 전문분야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므로써 법관에게 영향력 있는 자문위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의 유사제도들 기존 제도 및 외국의 유사제도들과의 비교

국내의 기존 제도와외의 비교: 감정인 제도, 참고인 진술제도, 조사관제도

감정인 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전문적

지식에 대한 조언은 감정인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감정은 전문 분야의 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내린 판단을 말하고, 이를 보고하는 자를 감정인이라고 한다(함영주, 2008).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특정인을 감정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받지 않고 감정인을 스스로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증거 자료가 되지 않지만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보충하는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즉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하여 자기 나름의 의견을 유지할 수 있고 감정인은 감정인대로 허위감정죄(형법 제154조)의 처벌을 받는다는 심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되므로 감정인의 선서의무를 가지지만 전문심리위원은 이러한 의무를 갖지 않고, 따라서 감정에 비해 신속하게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법원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인 사건의 쟁점정리를 돕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현실에서는 법원이 다른 어떤 감정인보다 더 쉽게 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선서를 할 필요도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해당사건에 대한 비밀누설죄나 수뢰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참고인 진술제도

상고심에서는 사실문제를 심리하지 않으므

로 감정인을 채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 2항에 의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인제도는 진술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서면방식은 취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낼 수 있으므로 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서 대개 미리 선정해 둔 명단에서 지정을 하나, 상고심의 참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진술해 줄 사람을 법원에 참고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중립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서면에 의한 의견서 진술이 가능하며 피고인들의 합의로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인 진술 제도보다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된다.

조사관제도

조사관제도는 대법원과 각 법원에 배치되어 법원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외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비슷하다. 대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을 조사관으로 파견 근무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 제도 중 가사조사관제도는 신분관계 분쟁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도록 가정법원 내에 조사관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전문심리위원과 달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외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문성의 성

격도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차원의 보다 높은 사건의 피고인들을 만나 그들과 면담을 하거나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조사관과 전문심리위원의 기능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각자의 고유 기능도 지니고 있다.

외국의 유사제도들

일본의 전문위원제도

일본의 전문위원제도는 1996년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심리의 충실·신속화를 위해 실무연구 등을 토대로 민사 소송의 심리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었다. 반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위원제도가 제안되었다(정영수, 2007).

사법제도개혁심의회건의서를 보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민사재판의 충실·신속화에 관한 정책에 덧붙여, 이하의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정책의 하나로서 ‘각종 전문영역에서 비법조의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서 그 분야의 전문 기술적 견지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여, 법관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에의 전문위원제도에 대해, 법원의 중립·공평성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배려 조치를 하면서, 각각의 전문성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2003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에 의해 전문위원제도가 신설되었다(2001: 정영수, 2007에서 재인용).

전문위원은 법원의 보조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 결정에 의해 절차에 관여하는 사

람이다. 이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나, 전문적 지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은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문위원은 쟁점정리 또는 진행협의와 증거조사 그리고 소송상 화해에 관여할 수 있다.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적 구두 변론(일본의 민사소송법 제164조; 이후 동법이라 칭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동법 제165조), 변론준비절차(동법 제168조)가 있으며, 모든 절차에 전문위원의 관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쌍방의 주장의 의미 및 증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며, 이후 쟁점이 부각되면 사안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다.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의견 및 설명을 반영하여 변론준비절차 그 자체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도 있다.

또한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진행협의(민사소송규칙 제95조)는 일반적으로 진행협의기일에 실시되며 전문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심리계획을 정하는 경우(동법 제 137조의2, 제 147조의3)에 전문위원을 관여시켜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소송의 진행을 전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위원의 관여는 법원 및 피고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보조받는 정도면 일반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의 성질, 해당 사건의 내용, 소송활동 등에 전문위원이 참가함에 따라 소송관계가 더 명료해지고 소송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증거조사절차에 전문위원이 참여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증거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 또는 증거조사결과의 취지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동법 제92조의2 제2항). 증거조사절차단계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한다. 증거조사결과의 취지를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결과 등의 취지 혹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과 증언 혹은 감정결과 등에 나타났던 전문용어의 의미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소송상 화해는 법원이 화해를 시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제92조의2 제3항). 초기에 쟁점이 정리되어 향후 소송의 진행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은 피고인의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문위원의 전문범위는 넓지만 이에 반에 한계점도 갖는다. 전문위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이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단,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지만, 법관이 석명²⁾의 전제로 전문위원에게 질문하는 경우이다. 또한 전문위원은 법원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보조하는 사람이므로 그 의견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문심리위원제도와 일본의 전문위원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영수, 2007). 일본의 전문위원 제도에는 첫째, 쟁점 등의 정리절차, 증거조사, 화해에서 전문위원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둘째, 쟁점 등의 정리절차 및 증거조사기일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데 비해, 증거조사기일에서 전문위원에게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고, 화해기일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당초 전문위원의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전문위원의 관여 결정의 취소, 전문위원의 지정 및 임면, 전문위원의 체척 및 기피, 수명법관 등의 권한 등은 우리의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거의 같다.

미국의 유사제도

일반적으로 미국 법정에서는 다음 3가지 방법 중의 1가지 방법으로 전문가를 해당 사건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Sales & Shuman, 2007/2009). 첫 번째 방법은 논쟁이 되는 어떤 사건에서 쟁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실과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시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사건의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를 사실 인정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중요 쟁점 사실에 관해 전문가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다. 주로 법의 합헌성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가증언이 법의 합헌성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사건 관련

전문가는 배심원들에게 해당 사건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시킨다. 이는 해당 사건의 증언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도록 하여 논쟁이 된 사실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배심원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방법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법정참여 방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정 조연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

법정 조연자를 뜻하는 Amicus curiae는 라틴어로 법정의 친구(friend of the court)라는 뜻이다(이수정, 서상진, 2010). 법원이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법률적이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받는 제도로서 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로마법에 기원한 이후 영국에서 보통법(common law)제도의 하나로 발달했으며, 이후 영미법계 국가에 널리 채용된 제도다.

법정 조연자 의견서의 주요 역할은 잘못된 결정을 피하고 법관을 보조하고 교육하여 중립적 조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Lowman, 1992).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미국 대법원에 법정 조연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를 제출해 왔다(Barrett & Morris, 1993). 이 의견서를 통해, APA는 특별히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법정에 알릴 수 있었다.

APA가 법정 절차에서 법정 조연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먼저 APA의 법정 조연자 의견서에 대한 참여 및 모든 요청이나 제안은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

즉 변호사 단체로 제출되게 된다. 요청된 내용이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이며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내용 분석을 위해 APA의 관련부서로 보내지게 된다. 이후 사건 관련 자료와 분석 자료는 검토와 분석을 위해 APA의 특정 부서로 보내져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부 기관과 심리전문가 등과 함께 해당 변호사 단체를 돕게 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사회로 보고되며 해당 사건이 심리학적으로 중요성,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충분한 연구와 자료, 문헌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되어진 후, 이사회는 법정 조연자 의견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APA의 법정 조연자 의견서의 적절성 여부는 심리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 법정 조연자 의견서의 본래 취지는 법관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곧 법관의 양형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견서는 재판 당사자 중 어느 쪽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Saks(1993)는 의견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목적을 강조하였다. 법정 조연자 의견서는 원고와 피고인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도움 혹은 손해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PA의 법정 조연자 의견서가 미국의 대법원 사법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2가지 평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법원의 주요한 의견서들이 APA의 법정 조연자 의견서와의 일관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출된 의견서가 양형의 결정에 인용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Tremper, 1987). 첫 번째 방

법의 경우, 각각의 대법원 결정들은 다양한 원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APA의 법정 조연자 의견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설명된 양형판단의 이유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전문가 증언(Testimony by expert)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제702조는 전문가 증언에 의한 증언(testimony by expert)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판단자(trier of fact, 배심원 혹은 법관 등)가 증거를 이해하거나 논쟁이 되는 사실을 결정하는데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전문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에 의해 전문가 자격을 갖춘 증언이 이에 대한 의견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증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첫째, 그 증언이 충분한 사실들(sufficient facts) 또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고, 둘째, 그 증언이 신뢰로운 원칙(principle)과 방법들(methods)에 따른 결과물이어야 하며, 셋째, 증언이 그 원칙과 방법을 신뢰롭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했어야 한다.

법정에서의 전문가증언의 목표는 사실 판단자(배심원 혹은 법관 등)에게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Vidmar, 2005). 즉, 법관은 전문가의 증언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련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전문가의 법정 증언 허용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과학적 증거와 증거능력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 학설 그리고

연방증거규칙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Frye Test는 과학적 방법과 기술이 과학계의 일반적 승인(general acceptance)을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Daubert 기준은 과학적 타당도를 법관이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관련성(relevance)은 미국의 증거법학자 McCormick이 주장한 것으로 증거의 증명가치(probativ value)와 편견가능성(prejudicial value)을 감안하여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 사례들 간략히 살펴보고, 각 기준들이 미국 내 관련 사건의 판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

Frye Test와 일반적 승인(general acceptance).

Frye v. United States 소송(Frye v. United States, 293 F. 1013, D. C. Cir., 1923)³⁾는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에 대한 최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Frye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요청한 전문가 증언이 배척된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 과학적 분야에서 일반적 승인(general acceptance)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고 그 기각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후 각종

3) 피고인 Frye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거짓말탐지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수축혈압(systolic blood pressure)방식에 의한 거짓말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를 전문가 증언으로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를 판결한 연방항소법원은 ‘과학적 원칙은 해당 특정분야에서 보편적인 승인(general acceptance)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동 사건의 심장수축혈압방식은 아직까지 생리학·심리학 분야에서 그러한 지이나 과학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고 그 기각 이유를 설명하였다. Frye는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증거법상의 전통적 기준인 관련성과 유용성의 기준에 따라 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지만 그 주장은 배척되었다.

민·형사 소송에서는 Frye 소송을 ‘일반적 승인이 결여된 전문가 증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로 인용하였으며, 이는 1993년 Daubert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약 70년간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왔다(Giannelli, 2006).

Frye Test는 해당 과학적 분야에서의 ‘일반적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증거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일반적 승인’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엄격하여 새로운 원리나 기술을 쉽게 재판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Daubert 기준과 과학적 증거의 허용 기준.

Daubert 재판(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509 U.S. 579, 1993)⁴⁾의 판결문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관련성은 사실 판단자의 증거를 이해하거나 논쟁이

되는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명 Daubert 기준이라고 알려진 다음의 5가지 기준을 통해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Glancy & Saini, 2009).

첫째, 과학적 이론 혹은 기술이 검증할 수 있는지 혹은 검증되었는지(falsifiability)의 여부

둘째, 이론 혹은 기술이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되고 출판되었는지(peer review and publication)의 여부

셋째, 기술에 대해 알려진 혹은 잠재된 오류율(rate of error)이 얼마인지의 여부

넷째, 문제된 이론과 기술의 응용을 통제하는 기준의 존재 및 지속성 여부

다섯째, 관련 학계 내의 일반적 승인(generally accepted)을 이끄는지의 여부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위의 5가지 기준들은 이론, 연구기법, 기술, 기법 등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뜻이며, 법원은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가 전문화되고 첨단화됨에 따라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어 사건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Krafka, Dunn, Johnson, Cecil과 Miletich 등 (2002)은 1991년인 Daubert 기준이 적용되기 전과 1998년 Daubert 기준이 적용된 후에 법관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증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aubert 기준이 적용된 후가 적용된 전보다 재판 전부터 전문

4) Mrs. Daubert는 임신 중에 Merrill-Dow 제약회사가 만든 메스꺼움을 경감시켜주는 ‘벤덱틴’이라는 약을 복용하였다. 이후 두 명의 기형아를 낳았다. 이 사건이 ‘벤덱틴’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Merrill-Dow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물실험과 화학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원고는 ‘벤덱틴’이 태아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할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8명의 증언을 준비하였고, 반면, 제약회사 측은 Doctor Lamm의 전문가 증언을 이용하여 인체유해성 및 임신부의 영향 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벤덱틴’의 복용은 기형아의 출산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연방 9 항소법원은 Daubert측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관련 학계의 인정을 받는 입증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Frye Test 기준인 ‘일반적 승인’이 없다고 기각했고,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다.

가 증언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제한 혹은 배제시키는 비율이 25%에서 41%로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aubert 기준 적용 이후, 법관들이 전문가 증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Daubert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Gotowski, Dobbin, Richardson, Ginsburg, Merlino, & Dahir 등(2001)은 40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론 혹은 기술이 학계의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되고 출판되었는지의 여부(71%)와 이론 혹은 기술이 해당 하계에서 일반적 승인을 이끌어내는지의 여부(82%)는 전문가의 증언 허용 여부 판단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설문지에 참여한 법관들 중 88%의 법관이 검증되었거나 검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전문가 증언의 허용에 매우 유용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 중 단 6%만이 Daubert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가 증언이 결합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지 혹은 타당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는 Daubert 기준에 대해 법관들이 전문가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Daubert 소송은 전문가 증언이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시켰으며 이는 증거에 대한 연방법 403조에 반영되었다. 또한 법관이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감시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법관이 독립적으로 전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증거

에 관한 연방법 706조(Federal Rules of Evidences 706)가 권고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관련성이란 연방증거규칙 제401조와 403조의 규정에 의해 증거가 없을 때 보다 요증사실의 개연성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경향이 있고 그 증거의 편견의 위험성이 증명가치를 훨씬 초과하지 않을 때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즉, 새로운 과학적 증거도 다른 증거와 함께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McCormick은 ‘증거가 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되고, 증거의 증명가치가 편견가치에 의해 크게 압도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련성 기준을 제시하였다(Giannelli, 2006). 연방증거규칙의 제401조와 제403조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증거능력을 결정하고, 이후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증거규칙을 살펴보면 제401조⁵⁾는 관련성의 원칙은 사건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입증 혹은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는 매우 폭 넓은 개념이며 법관은 자신의 재량을 전제로 하게 된다. 또한 제403조⁶⁾는 사건에 대한 편견의 위험이 증명가치보다 커서는 안 되며 상당한 정도로 커야만 증거배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401조는 법관의 재량을 전제로 하며, 제403조는

- 5) 관련성 있는 증거란 그 증거가 없을 때 보다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실의 존재의 개연성이 더한지 덜한지를 밝히는 경향이 있는 증거를 말한다.
- 6) 비록 관련성이 있더라도 논쟁의 혼동, 배심에 대한 오해의 소지, 부당한 재판의 지연, 시간 낭비, 불필요한 증거의 반복 제출과 같은 불공평한 편견의 위험성이 증거의 증명가치보다 상당한 정도로 큰 경우 증거는 배제될 수 있다.

증거가 설득력이 없어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위험성이 증명가치를 상당하는 정도로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관련성 접근 방법에 의하면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는 법관의 폭 넓은 재량이 허용되며 이는 Daubert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된다.

전문심리위원이 심리적 설명에 사용하는 심리평가 도구

외국의 제도들이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도입되면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피고인의 심리적 설명을 위해 심리평가 도구들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한다.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해로운 행동이나 사건의 개연성을 계산하고, 행동/사건의 빈도를 평가하여, 행동/사건이 미칠 영향과 그 영향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Kemshall, 1996). 또한 MacLean Committee(2000)는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폭력범죄자나 성범죄자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범죄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성

7)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평가와는 다른 의미이다(Clark, 1999). 위험성(risk)은 개인의 미래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것을 의미하고, 위험(dangerousness)은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위험한 결과나 불행한 결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위험성과 위험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risk’는 전통적으로 기회의 상실이나 획득과 관련되어 왔으며, ‘dangerousness’는 문맥상 상황적 요인과 함께 성격적 특성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risk’로 대체되어 왔다.

을 평가하는 것이며, 위험성을 ‘범죄를 저지러 가능성, 또는 재범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미래에 범죄를 저지러 가능성을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이고, 위험요인은 ‘범죄 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인 또는 재범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범죄는 ‘법에 규정된 범법행위’라고 정의하면, 위험성 평가는 범죄를 저지러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혹은 미래에 재범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범죄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발생된 범죄를 묘사하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재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여 범죄를 예측하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과거부터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재범과 같이 범죄관련분야에서 사용되어왔으며,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분류도 위험성 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교도소 내의 입소자들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하여 분류하고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할 입소자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요인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 직업 등 해당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프로파일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의 요인들은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 있게 재범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판단되는 요인들로 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게 된다.

범죄자들의 재범 예측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반복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실증적 결과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형사사법 현장에서 더욱 정확성이 높은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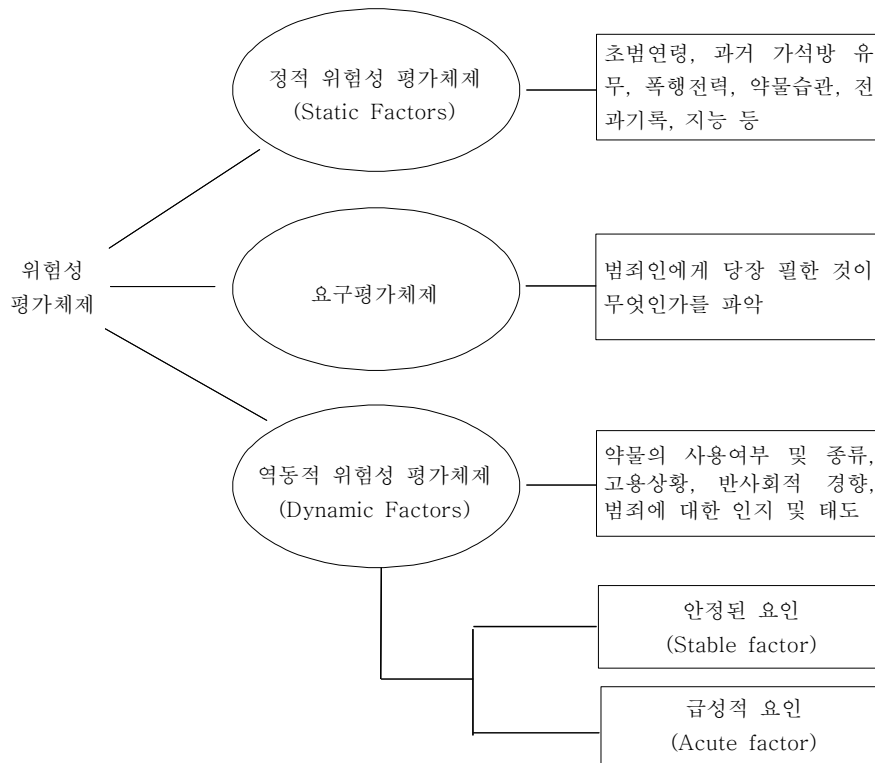


그림 1. 위험성 평가 체제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사법체계 안에서 위험성 평가는 의사결정자들이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임상적, 경험적 평가방식과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 개발한 보험계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리적 평가는 구체적 변수에 근거함으로써 재범 발생률을 예측함에 있어 임상적, 경험적 평가방식보다 더 객관적 결과를 산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onta, Law, & Hanson, 1998; Harris, Rice, & Quinsey, 1993; Hanson & Bussiere, 1998;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1995; Mossman, 1994).

좋은 보험계리적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역동적 위험 예측요인에 더하여 정적 요인을 통합한 평가 방식이다(이수정, 김범준, 고려진,

대검찰청, 경기대학교, 2008). 정적 위험성 평가체제는 주로 보안을 목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한다. 위험성 평가체제에 대한 내용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나 범죄행위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정적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급성 위험성 평정체제의 준거들을 살펴보면, 초범연령, 과거 가석방 유무, 발달적 과거, 폭행전력, 약물습관 등 사건 및 전과기록을 토대로 하여 해당 범죄자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한 항목들을 변하지 않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도 정적 위험요인에 속하며 장기간의 재범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정적 위험요인은 장기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요인들이 과거에 속하는 변

표 1. 각 범죄 유형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구

범죄유형	권장되는 평가도구	수용되는 평가도구
폭력	PCL-R	MMPI-2, PAI, PCL-R, PCL-SV, VRAG, WAIS-III
성폭력	PCL-R	MMPI-2, PAI, PCL-R, PCL-SV, VRAG, WAIS-III, SVR-20, SORAG

MMPI-2,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SV, Psychopathy Checklist-Screening Version; VRAG,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SORAG, Sex Offender Risk Appraisal Guide; SVR-20, Sexual Violence Risk-20; WAIS-III,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II.

화하기 어려운 본성과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거 한 후 위험성 단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요구 평가체제는 범죄경력보다 범죄인들에게 직업훈련, 교육, 경제적 도움, 치료 등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역동적 위험성 평가체제는 치료를 목적으로 범죄인들의 특성을 평가하는 경우 정적 위험

요인만으로 구성된 통계적 위험요인보다 역동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처우의 적용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약물의 사용 여부와 약물 종류, 고용상황, 반사회적 경향과 같은 범죄경력 이외의 사실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등을 포함한다. 역동적 위험요인은 개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 몇 달 내에는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안정적 역동 위험 요인과 며칠 혹은 몇 시간 내에도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성 역동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Lally(2003)는 법정단계에서 심리검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18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정 단계에서 각 사건에 따른 가장 적합한

심리검사도구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 중 반환률은 총 35%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범행당시의 정신이상 평가도구, 폭력위험성 평가도구, 성폭력위험성 평가도구, 소송능력 평가도구, 미란다 권리에 대한 포기능력 평가도구, 피병 평가도구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폭력위험성 평가도구는 PCL-R이 권장되었으며, MMPI-2, PCL-SV, VRAG, WAIS-III, PAI가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위험성 평가도구도 폭력위험성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권장되는 평가 도구로는 PCL-R이 있으며 수용되는 검사도구로는 MMPI-2, PCL-SV, VRAG, WAIS-III, PAI, PCL-R이 있다. 피병을 측정하기 위해 권장되는 검사는 MMPI-2, SIRS이 있으며, MMPI-2, SIRS, WAIS-III, Rey, PAI, VIP, TOMM가 수용되는 검사도구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 도구로써 사이코패스 평가 도구인 PCL-R 한국판 표준화(Psychopathy Checklist-Revised, 조은경, 이수정, 2009)와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KSORAS,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를 사용하고 있다. PCL-R은 평가자

가 면담 후 채점하는 방식의 평가자 도구로서, 정신병질 측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자 방식의 도구이다. Hare(1991)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재범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신병질의 진단 도구로 개발되어 졌다. 그러나 폭력재범(Rice, Harris, & Quinsey, 1990)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재범(Hart, Kropp, & Hare, 1988)에서도 그 예측력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PCL-R은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로 PCL-R 지침서의 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엄격히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척도는 0~2점까지이며, 0점은 관련내용이 각 문항과 전혀 무관한 경우이며, 2점은 관련 내용이 각 문항과 매우 잘 부합되는 경우의 배점이다.

KSORAS는 한국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적 위험성 요인들로 구성된 평가도구로서 한국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성 도구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KSORAS는 최종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은 1~29점이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며 평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범죄자이다.

PAI(Morey, 1991)는 주요 임상척도와 치료고려척도, 대인관계를 포함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인들을 다루고 있는 자기보고식 성격질문지이다. 구성타당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 중요한 구성개념을 둘러싼 주요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진술은 자기보고형 도구 개발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전체 344문항이며 22개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22개 척도는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22개의 척도 중 10개의 척도는 이론적으로 유도한 3~4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복잡한 임상적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진단용 성격검사보다 해석이 더 용이하다. PAI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법정 현장 연구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MMPI 검사는 집단을 구별해 주는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검사로서, 정신장애 진단용 검사로 분류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격 특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Cornell, Miller, & Benedek, 1988). 또한 컴퓨터를 사용한 MMPI-2를 통해 개인 프로파일의 약 66%까지 유형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공정식, 2011). 그 밖에도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MCMI(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도 잠재적 위험성의 유형분류체제의 사용에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된 성격검사들은 수형자들의 분류 등 진단적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가석방 심의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구들의 구체적인 재범예측력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성격검사 결과 산출된 수형자들의 유형 중 신경증적인 유형의 수용자들은 출소 후 10년에 걸친 재범 가능성이 공격적인 유형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공정식, 2011).

이외에도 정신질환을 꾸밀 가능성에 대한 검사도구인 M-FAST(Miller Forensic Assessment of Symptoms)도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M-FAST는 Miller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5문항으로 구성된 스크리닝 도구이다(공정식, 2011). 피병을 보이는 개인들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응양식과 면담전략을 조직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FAST는 진단적 면담에 대한 정규 훈련을 받은 정신보건 임상가와 법정 심리학자, 또는 정신의학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며, 이 검사를 실시하는 임상가들은 구조화된 면담의 제한점을 알고 능숙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는 앞서 설명한 심리평가도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을 측정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도구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 또한 포함된다. 면담내용에는 성격, 가정환경, 나이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범죄경력, 범죄행위의 유형, 동기, 수단,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은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이전, 형법 제 51조의 양형인자들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며, 이때는 법관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느낌이나 직관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형법 51조의 양형인자와 전문심리위원의 의

견서 연관성을 살펴보면, 범죄 행동의 동기는 심리적 요소이므로 법관의 직관보다는 전문심리위원의 객관적 판단이 더욱 신뢰롭다고 판단된다. 또한 범행의 수단의 경우,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어떤 심리에서 그 흉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지와 범행 전·후의 정황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인자로 이는 피고인의 성격 판단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

표 2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창원 등 5개 지역에서 접수된 형사공판사건과 이들 중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피고인의 심리적 설명을 의뢰한 126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실태를 정리한 것이다(법원행정처, 2010). 이는 모든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의 활동이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 한정된 전문가보고서 현황임을 미리 밝혀두겠다.

표 2를 보면, 2007년 12월 21일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신설되고 입법된 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서에 대한 요

표 2. 심리학 분야에서의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실태

기간	접수된 형사공판 사례-1심	접수된 형사공판 사례-항소심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서를 요청한 재판 수	심리적 설명서를 인용한 판결문
2008년	122,263건	32,897건	42건	28건(66.7%)
2009년	124,444건	34,270건	58건	36건(62.0%)
2010년	112,220건	34,239건	26건	15건(57.7%)

청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판결할 때 피고인의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을 참고로 양형을 판결한 사건들이 전체 사건의 과반수를 넘는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해 공판정에서의 전문가의 전문적 설명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논쟁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비록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이 법원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기에 매우 적은 수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2010년 법원이 요청한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서의 요청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전년도인 2009년 58건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쳐 본 제도의 활용이 감소됨을 볼 수 있다. 이는 2010년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한 판결전조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체 접수된 형사공판사례보다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의견서를 많이 요청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은 수요자인 재판부이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점, 재판부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켜야 하는 점, 관련 사건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의 요청이 곧 이를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 이OO 사건(2009고합356,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1심에서는 범죄의 잔혹성과 사체오욕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2심에서는 11년이 증형되어 23년형을 받았다.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요청한 사항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결정을 위한 양형인자, 즉 피고인의 정신상태, 성의식, 재범의 위험성, 개선 및 교화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제시이다. 이를 위해, 먼저 피고인의 가정환경, 학교 및 군대 생활, 경제 능력, 결혼관계 등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위해 PCL-R과 KSORAS 등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국OO 사건(2009고합117, 대전지방법원)은 연쇄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가 요청된 2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음으로써 1심에 비해 2심에서 증형되었다. 이 때,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요구된 사항은, 1.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고인의 기억력장애유무, 3.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의 유무와 정도, 4. 치료의 필요성유무와 방법이였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준비하기) 위해 먼저 피고인의 어린 시절, 가정환경, 학교 및 군대, 직장 생활 등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요구 사항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심층면담만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두 번째, 피고인의 기억력장애유무의 평가는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장의 거짓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병을 진단하는

심리검사도구인 M-FAST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였다. 세 번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KSORAS와 PCL-R 검사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 치료의 필요성 유무와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심층면담과 심리검사도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를 요청하였고 양형이 증형되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의 판결문 어디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과연 이 제도가 판사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는 없다. 법관들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의 활용 유무를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에 비해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감정서가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 비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및 설명서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명단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는 시간과 비용 부분에서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양형이유를 적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판결문의 양형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외국에서는 판사가 양형이유를 판결문에 의무적으로 적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이는 사건 당사자의 승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독일은 양형 판단 이유를 적도록 형사소송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미국·영국도 공개 법정에서 판사가 양형 이유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설명하

게 하고 있다. 양형이유가 현재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면 양형판단에 있어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을 들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고 특수하고 복잡한 사건의 신속한 감정 절차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들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이 제도가 실제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소송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마련되고 재판부에서 전문가의 심리적 설명서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양형판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의 및 제언

양형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법관은 양형을 판단할 때 자신의 재량권에 따라 해당 사건, 해당 피고인, 선례 등을 고려하며 법관의 성장환경, 성격, 주관적 경험, 여론 등도 양형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법관의 사회적 경험은 제한되어있고 전문적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며 법관에 따라 그 경험치와 환경이 다르므로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양형을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법관의 균형 잡힌 적절한 양형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결과는 곧 피고인과 일반국민들이 사법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법원행정처,

2002). 따라서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함에 있어 조언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약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도했던 만큼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한 전문가 및 법관의 이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사례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사례가 적다. 이는 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재판부의 기존의 비슷한 제도를 이용하려는 성향도 짙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정 사례를 늘림으로써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본 제도의 활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단 3사람뿐이다. 이 3인의 전문가도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되어 설명서를 요청받더라도 불가피하게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적 시간 내기가 쉬운 소장학자나 은퇴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 가능한 후보자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전문심리위원과 법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후보자 중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에 참여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상당 부분을 담당 사무관과 실무

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 담당자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숙련된 제도운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설명서 의뢰뿐만 아니라 해당사건의 재판 진행 중 관련 전문 지식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종결 후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준다면 전문심리위원의 자부심을 높여 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요청한 재판의 경우,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해당 의견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한다면 당사자들 간에는 양형판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판부에는 본 제도의 활용성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공정식 (2011). 살아있는 범죄학. 교육과학사.
 법원행정처 (2002). 새로운 형사재판실무. 서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0).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 309-345.
 이수정, 김범준, 고려진, 대검찰청, 경기대학교 (2008).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과 구형요인으로서의 활용가능성 탐색. 서울: 대검찰청, 경기대학교,
 이수정, 서상진 (2010). 국내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실태. 한국경찰연구, 9, 137-160.
 정영수 (2007). 민사소송에서의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70-200.

- 조은경, 이수정 (2009). PCL-R 한국판 표준화,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함영주 (2008).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283-314.
- Appendix VII: Procedures for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http://www.apa.org/about/division/officers/handbook/amicus.aspx>.에서 2011. 12, 24 인출
- Clark, D. (1999). Risk assessment in prisons and probation. *Forensic Update*, 1, 15-18.
- Cornell, D., Miller, C., & Benedek, E. (1988). Comparing Male and Female Juveniles Charged With Homicide: Child Maltreatment, Substance Abuse, and Crime Detai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 601-617.
-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 S. 579. (1993)
- Bonta, Law, & Hanson,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39, 127-144.
- Giannelli, P. (2006). *The Daubert Trilogy and the law of Expert Testimony*. In R Lempert (Ed.), Evidence Stories (p.181-185). Eagan, Minnesota: West Group.
- Glancy, G. D., & Saini, M. (2009). The confluence of evidence-based practice and Daubert within the fields of forensic psychiatry and the law.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7, 438-441.
- Gotowski, S. I., Dobbin, S. A., Richardson, J. T., Ginsburg, G. P., Merlino, M. L., & Dahir, V. (2001). Asking the gatekeepers: A national survey of judges on judging expert evidence in a post-Daubert world. *Law and Human Behavior*, 25(5), 433-458.
- Grove, W. M., Zald, D. H. Lebow, B. S., Snitz, B. E., & Nelson, C. (1995). *Clinical vs. mechanical prediction: A meta-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 Hanson, R. K., & Bussiere,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t, S., Kropp, P. R., & Hare, R. (1988). Performance of male psychopaths following conditional release from pris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27-232
- Harris, G. T., Rice, M. E., & Quinsey, V. L. (1993). Violent recidivism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e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Prediction Instru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 315-335.
- Kemshall, H. (1996). A review of research on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risk and dangerousnes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Probation Service. *A report for the Home Office Research and Statistics Directorate*. London: Home office.
- Krafka, C., Dunn, M. A., Johnson, M. T., Cecil, J. S., & Miletich D. (2002). Judge and attorney experiences, practices, and concerns regarding expert testimony in federal civil trial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8(3), 309-332.
- Lally, S. J. (2003). What tests are acceptable for

- use in forensic evaluations? A survey of experts: A Survey of Exper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 491-498
- Lowman, M. K. (1992). The Litigating Amicus Curiae: When Does the Party Begin After the Friends Leave?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41, 1243-1299.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ssman, D. (1994). Assessing predictors of violence: Being accurate about accur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783-792.
- Rasche, C. (1975). The Female Offender as an Object of Crimina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 301-320
- Rice, M. E., Harris, G. T., & Quinsey, V. L. (1990) Sexual recidivism among child molesters released from a maximum security institu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381-386.
- Tremper, C. (1987). Organized psychology's efforts to influence judicial policy-making. *American Psychologist*, 42, 496-501.
- Sales, B. D., & Shuman, D. W. (2009). 증언대 위의 과학.(조은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7에 출판)
- Vidmar, N. (2005). Expert evidence,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jur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 137-143.
- 1 차원고접수 : 2012. 2. 9.
심사통과접수 : 2012. 3. 2.
최종원고접수 : 2012. 3. 26.

Reality of Application of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Domestic Judicial System

Lee, Sun-Kun

Kyonggi University

As modern society become more complicated and science are developing, proper and timely dispute resolutions are demanded for specialized litigations such as construction litigation, health care litig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Full trial of such litigations are demanded as well. However, it is difficult to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ll area of litigation by judges in reality. For that reason, the court indicates experts for the related area to obtain their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is called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opinion on sentencing in real criminal cases by judges after introducing psychology area out of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criminal justice in Korea. First, introduction of expert commissioner system and related official regulation has been studied. In addition similar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have been studied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have been introduced to explain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Korea. Several cases have been reviewed to understand influenc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from the cases which expert commissioner system was applied on assessment of cases by judges. As a result, request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ve been increased during year 2008 when first time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2009, but the request has been plunged in year 2010. Even if the cases apply this system, no psychological explanation was recorded for the reason of sentencing by judicial decis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detect whether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effect on sentencing or not. Consequently, judges still have some freedom of sentencing even if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been requested still after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offer objective standard for sentencing by present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Key words : expert commissioner system, psychological explanation, assessment of a case